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I.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1년 또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에서 상호 협의하며 정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II. 계약의 목적

시설과 수급자와(보호자)의 계약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를 통하여 수급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함이다.
2. 수급자에 대하여 물질적, 정서적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함이다.
3. 수급자에 대하여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4. 수급자와 서비스제공자간 책임의 한도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

III. 계약자,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제공자(갑)와 서비스수급자(을)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① “을”의 안전한 하우스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시설 비급여 내용에 관한 구체적 설명 요구의 권리
- ② 시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설명 요구 권리
- ③ 시설 이용 시 수급자의 위급상황에 대한 즉각 통보 요구 권리

4.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IV.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수급자의 건강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 할 만큼 위중 할 때
-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4. 센터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을 때
-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수급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6. 5일 이상 결석을 하였을 때, 다만,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 시 15일까지 유보할 수 있으나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5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입소비용과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 해제를 유보할 수 있다.
-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V. 이용료 및 비용 변경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식대 및 비급여 항목의 변경이 필요 할 경우

2. 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본인 일부 부담금

①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② 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비율

(단위 : 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36,950	34,210	31,580	30,140	28,700	28,70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49,530	45,880	42,350	40,910	39,450	39,45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61,600	57,070	52,690	51,250	49,790	49,790
10시간 이상 ~ 13시간 미만	67,870	62,870	58,080	56,620	55,180	49,790
13시간 이상	72,780	67,420	62,280	60,840	59,400	49,790

구 분			금액(원)	내 역
공 단 보험료	일 반		15%	일반대상자
	기초수급자		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료급여 수급자
	기 타		6% 9%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자 부 담	비 급 여	식사	2식/4,000	2식 : 점심 2,000원, 저녁 2,000원(선택)
		간식	1일/1,000	일 1,000원(1식 500원, 2회 제공)

Ⅵ. 이용료 변경 절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 및 요양급여수가 변경 시 즉시 보호자에게 이를 알리고 건강보험 공단에서 적용하는 일자에 맞게 비용을 변경한다.
2. 비급여 항목의 경우 최소 30일 전에 보호자에게 변경 사유를 알리고 의견 청취 후 비용을 조정한다.

Ⅶ. 서비스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 감기기, 몸단장,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2. 신체기능 유지 - 신체기능 유지 및 향상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3. 인지기능 유지 - 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4. 건강지원 서비스 -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 및 치매관리. 간호, 질병 예방관리
5.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Ⅷ. 서비스 비용부담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란 계약 시 명시된 서비스 외 수급자와 보호자가 요청하는 개인적이고 특수한 서비스를 말한다.

Ⅸ. 의료 및 건강관리

1. 진찰, 처방, 응급 시 이송대책 등 의료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력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협력의료기관 시설방문, 시설의 간호(조무)사 입소자 건강상태 및 건강기록부 확인, 시설 응급환자에 대한 후송 및 진료협조, 상시적인 의료상담을 협조 받는다.
2. 수급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보호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호자는 이를 통보받았을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시설의 조치에 응해야 한다.
3. 시설은 서비스 제공도중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관련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4. 시설에서는 수급자의 건강 및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종사자들은 연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의료서비스 제공의 구체적인 절차를 준용하도록 한다.

X. 위급 시 조치

1. 시설은 수급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될 때에는 협약병원,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수급자가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시설은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시설은 타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XI. 특별한 보호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침실에서 보호하도록 한다. 단, 병원의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2. 병원 입원에 발생하는 비용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하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XII.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갑)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 ② 수급자가 보호자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③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④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